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9. 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오승환 )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6조의2)
  -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 고지서 1장당 500원
  -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
- 부칙
  -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2010. 12. 27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는 앞말과 뛰어 쓴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로 뛰어쓰기를 함.
- 안 제16조의2에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에서 결정함.
-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납부안내문 발송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1. 7.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와 같은 150원으로 정함.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우편요금 절감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와 서울시와 형평을 고려하여 2011. 7.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와 같은 500원으로 정함.
-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함.
- 부칙에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가 필요하고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납세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4 호
----------	--------

제출연월일 : 2011.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 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 다.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함.
- 라.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3.24 ~ 4.13,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011. 4.20) 결과 : 원안가결
-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u></p> <p><u>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u></p> <p style="margin-left: 2em;"><u>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u></p> <p style="margin-left: 2em;"><u>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u></p> <p><u>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u></p>